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8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나590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877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영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박종진, 김진형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15. 2. 6.자 1,000,000원, 2015. 2. 6.자 26,085,000원, 2015. 5. 20.자 70,000,000원, 2015. 5. 27.자 30,34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9. 9. 1. 여관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원고로부터 익산시 D 대 261.6㎡ 및 그 지상 5층 규모의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9. 9. 2.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9. 9. 1. ‘피고가 1억 원을 정히 차용하며 상환일은 2010. 8. 3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12. 7.경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0. 9. 7.경 폐업을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2. 9.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고, G에 2015. 2. 6. 100만 원을, 2015. 2. 6. 26,085,000원을, 2015. 5. 20. 7,000만 원을, 2015. 5. 27. 3,034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 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룬다.

2)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숙박업은 기본적 상행위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상법 제46조 제9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의 일종인 여관업의 기본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 직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해온 상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는 피고 B가 여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여관업을 영위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고, 피고 B는 실제로 이 사건 매매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해당 영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상인인 피고 B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준소비대차 약정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 데, ① 피고 B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시 상인이었던 점, ② 원고의 기존 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 점,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0. 8. 31.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장모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2. 6. 100만 원을, 2015. 2. 6. 26,085,000원을, 2015. 5. 20. 7,000만 원을, 2015. 5. 27. 3,03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위 금원지급행위 중 피보전채권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